

9. 建設行政刷新에 따른 制度改善

資料提供 : 建設部

- '91. 10월이후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추진방침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건설 행정쇄신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쇄신의 핵심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219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106건(48%)을 이미 개선하였고 56건은 금년중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7건은 '93년이후 개선할 예정임
- 특히 '92. 5. 1 개설한 건설민원상담실을 통하여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발굴한 14건을 건설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중 7건을 추가로 개선키로 확정하였음
- 추가로 확정된 주요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고속도로 통행중 중도·진출입시의 통행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행권 이면의 안내문안을 조정키로 하였음
 -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4개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년초에 시험시행시기 선발예정인 원을 일괄 공고토록 함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증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기도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도로변에 휴게소등 설치시 받는 도로점·사용허가기준이 없어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민원해소를 허가기준을 구체화, 일원화함

* 첨부 : 주요개선 내용 1부. 끝.

주 요 개 선 내 용

■ 고속도로 통행권 이용 제도개선

- 이제까지는 고속도로 이용 중 중도에서 나왔다가 다시 진입할 경우 확인을 받아 통행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통행권 이면에 “중도진출시 전도 무효”라는 문안에 인쇄되어 있어 이용자가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쇄문안을 “중도진출시 환불은 불가하니 확인을 받아 재진입 가능”으로 고치도록 도로공사에 시달하여 ’92. 10월 중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시험계획의 일괄광고

-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는 건축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등 4개시험 시행 공고를 지금까지는 시험시행 30일전에 각각 하였으나
- 내년부터는 시험시기, 선발예정인원등 응시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년초(1월중)에 일괄 공고함으로서 응시자와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 다만 시험장소 시험시간등 세부적인 사항은 종전과 같이 시험시행 30일전에 공고하게 된다.

■ 잔여지 보상기준 세분화

공공용지외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로공사등 각공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가 소규모이거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담당공무원이 감사등을 의식하여 잔여지 매입을 기피하거나 시행자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92년 말까지 잔여지 매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하였다.

■ 도로점용 허가기준

국도등 각종 도로변에 휴게소, 주유소 진입도로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도로관리청마다 적용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도로점·사용에 따른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92년 말까지 도로점·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하였다.

■ 현장대리인 배치 확인

지금까지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배치기준에 의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5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으로 10년이상 10억이상 공사는 기사 1급이상 10억미만 공사는 기사 2급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규모의 대형화의 노임인상등으로 공사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배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92년 말까지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키로 하였다.

건설부가 각부처에 조정내용을 보면 기술사는 2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10년이상 기사 1급은 50억이상 공사, 기사 1급은 10억이상 공사, 기사 2급은 10억미만의 공사현장에 배치 토록 되어있다.

■ 중기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금까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중기에 대하여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중기에 대하여도 자동차와 같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중기등록 또는 검사시에 확인토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보상을 보장토록 '92년 말까지 자동차손해보상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명시토록 하였다.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 있는 미래도시